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74, 2021고정131(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웅희, 남철우(각 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순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874』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C, 본관 4층에 본점을 두고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와 대전 중구 E, 1층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 위 D와 위 F에서 각 부장의 직책으로 피고인 B을 도와 대출 및 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14.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6,000,000원을 8일간 대부하면서 플랫폼 비용 명목으로 610,000원, 이자 명목 60,000원, 합계 670,000원을 받아 연 약 50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62,925,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021고정131』

피고인 A는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9. 6. 3. 대구 중구 C 본관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채무자 H에게 자금 50,000,000원을 185일간 대부하면서 연 32.9%에 해당하는 P2P플랫폼비 400만 원과 이자 3,666,470원 합계 7,666,4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부터 2019. 12. 5.경까지 채무자에게 합계 17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25,827,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관리내역표, 계좌거래내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표, 의견서 첨부자료

『2021고정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대부약정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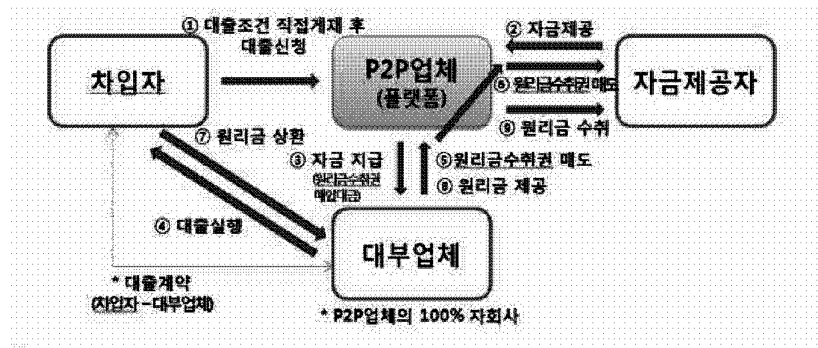
채무자들이 지급한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자인 D가 아니라 별개의 법인인 F이 플랫폼이용계약에 기하여 수취한 것이고, F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이를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로 간주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취한 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른바 P2P대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가 플랫폼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자금제공자(투자자)가 해당 차입자의 신용과 자력을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플랫폼업체가 자신의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대부업체는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고 플랫폼업체는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사용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방식을 말한다.



판시 각 대출은 P2P대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채무자들은 대부업체인 D와 는 대출거래계약을, 플랫폼업체인 F과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② 대부업체인 D와 플랫폼업체인 F의 대표자는 모두 피고인 B으로 동일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A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에는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였다. 비록 위 두 회사가 형식적으로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대출과정에서 D와의 대부거래계약 및 F과의 플랫폼 이용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졌고, P2P대출 방식의 구조상 채무자들이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



드시 F과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플랫폼이용계약과 대출거래계약은 불가분의 과정으로 결합되어 있다.

③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자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뿐이다.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위 플랫폼 사용 수수료는 대출거래계약에 수반하여 지출한 돈으로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만일 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아닌 별개의 법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리의 이자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같은 취지에서 P2P대출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이자율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채무자 G에 대한 범행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을 빌미로 채무자들로부터 사실상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채무자들에게 초과수취한 이자를 일부 반환하거나 잔여 원리금과 상계하고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별지

범죄일람표 1

연 번	대출기간	대출금액(원)	대출일수	플랫폼비		이자		총합계(원) (플랫폼비 +이자)	연이자 율(%)
				지급일시	금액(원)	지급일시	금액(원)		
1	2018. 11. 14.부터 2018. 11. 22.까지	6,000,000	8일	2018. 11. 14.	610,000	2018. 11. 22.	60,000	670,000	약 509
2	2018. 11. 21.부터 2018. 12. 24.까지	20,000,000	33일	2018. 11. 21.	2,000,000	2018. 12. 19. 2018. 12. 24.	233,000 253,150	2,486,150	약 137
3	2018. 11. 28.부터 2018. 12. 24.까지	20,000,000	26일	2018. 11. 28.	2,000,000	2018. 12. 19. 2018. 12. 24.	233,000 199,450	2,432,450	약 171
4	2018. 12. 24.부터 2019. 01. 03.까지	45,000,000	10일	2018. 12. 24.	4,500,000	2019. 01. 03.	525,000	5,025,000	약 408
5	2019. 02. 11.부터 2019. 03. 08.까지	20,000,000	25일	2019. 02. 11.	2,000,000	2019. 03. 08.	233,330	2,233,330	약 163
6	2019. 03. 08.부터 2019. 04. 08.까지	70,000,000	14일	2019. 03. 08.	7,000,000	2019. 03. 22. 2019. 03. 25. 2019. 04. 08.	282,260 112,900 124,440	7,519,600	약 280
7	2019. 11. 29.부터 2020. 01. 23.까지	20,000,000	55일	2019. 11. 29. 2019. 12. 27.	2,000,000 2,000,000	2019. 12. 27. 2020. 01. 23.	233,330 233,330	4,466,660	약 148
8	2020. 01. 23.부터 2020. 09. 11.까지	25,000,000	232일	2020. 01. 23. 2020. 02. 21. 2020. 03. 20. 2020. 04. 17. 2020. 05. 19. 2020. 06. 19. 2020. 07. 17. 2020. 08. 14. 2020. 09. 11.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020. 02. 21. 2020. 03. 20. 2020. 04. 17. 2020. 05. 19. 2020. 06. 19. 2020. 07. 17. 2020. 08. 14. 2020. 09. 11.	251,870 291,660 268,490 306,840 291,660 268,490 268,490 291,660	24,739,160	약 156
9	2020. 02. 28.부터 2020. 08. 21.까지	10,000,000	175일	2020. 02. 28. 2020. 03. 27. 2020. 04. 27. 2020. 05. 26. 2020. 06. 26. 2020. 07. 24.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2020. 03. 27. 2020. 04. 27. 2020. 05. 26. 2020. 06. 26. 2020. 07. 24. 2020. 08. 21.	107,390 116,660 116,660 116,660 107,390 107,390	6,672,150	약 13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연 번	대출기간	대출금액(원)	대출일수	플랫폼비		이자		총합계(원) (플랫폼비 +이자)	연이자 율(%)
				지급일시	금액(원)	지급일시	금액(원)		
10	2020. 03. 20.부터 2020. 09. 18.까지	30,000,000	182일	2020. 03. 20.	3,000,000	2020. 04. 17. 2020. 05. 19. 2020. 06. 19. 2020. 07. 17. 2020. 08. 19. 2020. 09. 18.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5,100,000	약 34
11	2020. 05. 26.부터 2020. 06. 08.까지	5,000,000	13일	2020. 05. 26.	500,000	2020. 06. 08.	23,010	523,010	약 294
12	2020. 08. 21.부터 2020. 09. 18.까지	5,000,000	28일	2020. 08. 21. 2020. 09. 18.	500,000 500,000	2020. 09. 18.	58,330	1,058,330	약 276
합 계		271,000,000			55,110,000		7,815,840	62,925,84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범죄일람표 2

연번	대출일시	대출장소	대출금액	플랫폼비 (지급방식)	이자		총합계	비고 (연이자율)
					지급일자	금액		
1	2019. 6. 3.	대구 중구 C, 본관 4층 대부사무실	5,000만 원	400만 원 (A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7.2 8.2 9.5 10.2 11.5 12.5	583,830원 583,830원 583,830원 585,000원 664,990원 664,990원	7,666,470원	32.9%
2	2019. 6. 14.	"	2,500만 원	250만 원 (J은행 D (계좌번호 2 생략))	7.12 8.13 9.17 10.14 11.15 12.5	291,660원 291,660원 291,660원 291,660원 291,660원 195,000원	4,153,300원	38.7%
3	2019. 6. 18.	"	3,000만 원	300만 원 (J은행 D (계좌번호 2 생략))	7.17 8.19 9.17 10.21 11.19 12.5	350,000원 350,000원 350,000원 379,720원 350,000원 249,440원	5,029,160원	40.0%
4	2019. 7. 11.	"	1,500만 원	450만 원 (J은행 D (계좌번호 2 생략))	8.13 9.17 10.30 12.5	175,000원 175,000원 175,000원 225,000원	5,250,000원	105%
5		"		70만 원 (J은행 D (계좌번호 2 생략))	10.30 12.5	49,410원 83,000원	832,410원	75.4%
6		"		30만 원 (J은행 D (계좌번호 2 생략))	12.5	35,270원	335,270원	283.3%
7		"		250만 원 (J은행 D (계좌번호 2 생략))	12.9	61,370원	2,561,370원	623.3%
합계			17,000만 원				25,827,980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663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노471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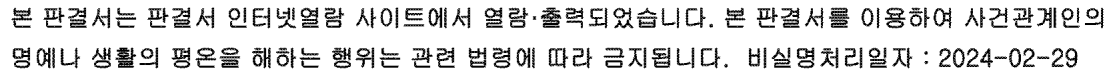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 _____